

중앙-지방,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공고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0. 9.21.(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2.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환경오염 저감 혁신기술 설비를 개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축적된 역량과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제 규모의 현장 실증화 지원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 도모

※ 사업화 소요비용 지원 : 선정 과제당 최대 6억원 이내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지역 내(인천시)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 (붙임2 참조)을 대상으로 해당 혁신 기술을 보유한 설비공급기업 (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설비공급기업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혁신기술 공급기업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
 - 설비공급기업 중 주관기관은 혁신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으로 수행기관을 대표하여 과제를 수행하며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 지정
- ※ 주관기관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 (지원내용) 지역 내(인천시)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 대상으로 혁신설비를 제작하여 국내사업장에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지원규모)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내로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6억원

※ 정부지원금 예산: 총72억원(최대 6억원 × 12개 과제)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주관기관 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60% 이하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 민간부담금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부담,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주관기관과 여타 수행기관 간 사전 조율 후 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최종평가결과 “성공”과제에 한해 총사업비의 20%이하의 금액 지급(수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용 선납부 수행)

3. 지원자격

- 설비공급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지역 내(인천시)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매칭희망 설비수요기업(붙임2 참조)을 대상으로 해당 혁신설비 관련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공급기업이 포함된 수행기관은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본 사업 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수행기관 중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년 이내 동사업과 유사한 지원사업(설치지원 사업)에서 동일기술이 적용되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동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text{자본잠식률(\%)} = [(\text{자본금} - \text{자기자본}) / \text{자본금}] \times 100$$

4. 추진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또는 우편 접수



6.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0.9.2.(수)~9.21.(월)
 - ※ 접수기간: 2020.9.14.(월)~9.21.(월) 18:00까지
-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C동 2층)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 ※ 사업신청서 제출은 접수기간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 요망(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원본 1부, 사본9부)
- 문의처:
 - (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김진석 차장(kjscks@keco.or.kr/032-590-4823)
서태원 대리(sss@keco.or.kr/032-590-4825)
 - (지역전담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한재길 책임연구원(jkhan@itp.or.kr/032-260-0841)
장윤정 전임연구원(lucyjyj@itp.or.kr/032-260-0843)

중앙-지방,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안내서

1. 사업개요

- (목적) 환경오염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축적된 역량과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제 규모의 현장 실증화 지원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 도모
- (지원내용 및 규모) 지역 내(인천시)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 수요기업(붙임2 참조) 대상으로 혁신설비를 제작하여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주관기관 유형별로 차등 지원되며 과제별 최대 6억원 지원

※ 정부지원예산 총 72억원(최대 6억원 × 12개 과제)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주관기관 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60% 이하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 민간부담금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부담,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주관기관과 여타 수행기관 간 사전 조율 후 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최종평가결과 “성공”과제에 한해 총사업비의 20%이하의 금액 지급(수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용 선납부 수행)

2. 신청자격

- 설비공급기업
 - 설비공급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설비공급기업 중 주관기관은 사업화 대상 기술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본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신청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
 - ※ 주관기관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3. 선정 및 평가 절차

○ (선정절차) 사전검토→선정평가→협약체결



- 사전검토: 참여제한(환경관련 법률 위반, 유사과제 해당여부, 휴·폐업 기업 등) 등 사전검토를 통한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 ※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및 지역전담기관(인천테크노파크)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 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조치
- 선정평가: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내용(사업비 구성 포함)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최대 8점) 부여하여 종합평점 산정

구분	평가항목	비고
선정평가	▪ 사업목적 부합성(사업대상 관련성, 혁신기술여부)	30점
	▪ 과제수행체계 및 역량(수행체계 적절성, 경영역량)	20점
	▪ 사업내용(사업계획서 완성도, 사업계획·사업비 적정성)	15점
	▪ 기술 혁신성(처리성능, 경제성, 유지관리 편의성)	25점
	▪ 기대효과(사업성, 환경·사회적 효과성)	10점

4. 협약체결

-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조정된 정부지원금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사업계획서 수정이 완료된 주관기관은 협약서를 작성, 이행보증보험증권(정부지원금 선금에 해당하는 금액), 신규개설 통장 사본,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등 서류와 함께 제출
 -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선금/잔금 지급 청구 시 제출
 - ※ 정부지원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이 정부지원금 지급비율(선금70%, 잔금30%)에 비례하여 선 입금된 후 지급
- 협약에 관련된 모든 증빙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협약 체결

5. 중간점검

- 전문기관은 수행기관 중간점검(현장방문)을 통해 수행실태 및 사업 계속 여부 결정('20.11~12월)
 - ※ 중간점검 결과가 “계속”인 경우에만 잔금(30%) 지급 및 계속 추진 가능

6. 최종보고 및 평가

- 최종보고: 협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목표 달성 실적 등을 최종 보고서를 증빙과 함께 제출
- 최종평가: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가 모두 제출된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
 - 최종평가 결과 평점 60점 이상 “성공”, 60점 미만 “실패”로 분류
 - ※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된 수행기업은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 진행

7. 사업비 지급, 계상, 관리 및 사용

- (정부지원금 지급) 정부지원금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사업수행의 계속여부가 결정된 지원기업에 한하여 30% 잔액 지급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지급)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에 한하여 총사업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확정하여 지급
- (계상·관리·사용) <참고2>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계상 후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며, 집행내역 기록 및 증빙서류 구비 관리
- (정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참고2>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성 검토 후 정산 금액 확정,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사용실적보고서 원본은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

8. 성과활용

- 사업 종료 후 3년간 매년 결산이 완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이외에 주관기관의 컨설팅기관 지정·위탁 및 컨설팅 추진 결과, 도입 기술·설비의 설치·구축 등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민간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문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문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 설비공급기업과 설비수요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도입 기술·설비의 설치·사용 등에 있어 수행기관과 이해관계자 간의 일체의 분쟁, 도입 기술·설비의 설치·구축 등의 안전성·신뢰성 등 소비자 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문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문기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
- 지원과제 추진에 있어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등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해결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참고1> 선정평가 기준

가. 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사업목적 부합성 (30)	사업대상 관련성(15)	- 환경오염물질 저감 효과성 - 설비가 설치되는 장소가 본 협력사업에 적절한 것인지 등 평가
	혁신 기술 여부(15)	- 기존 상용화 기술·설비와 차이가 있는 지 평가 - 스마트기술 등과 연계하여 설비의 효율성이 있는지 평가
과제수행체계 및 역량 (20)	과제수행체계 적절성(10)	- 설비공급기업 및 설비수요기업이 본 협력사업에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과제수행 경영역량(10)	- 사업 이해도, 사업 추진의지 - 재무현황, 생산능력, 기술개발능력
사업내용 (15)	사업계획서 완성도(2)	- 사업내용의 구체성, 실효성
	사업계획의 적정성(10)	- 목표 설정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기술적용의 적정성 -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비 산정 적정성(3)	- 사업비 산정 적정성
기술 혁신성 (25)	처리성능(10)	- 처리효율·시간 등 성능의 우수성 - 성능·품질의 재현을 위한 완성도
	경제성(10)	- 기존기술 대비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 정도
	유지관리 편의성(5)	- 운전·제어, 작업요원의 숙련 필요성 등 - 작업환경 등의 안전성
기대효과 (10)	사업성(5)	- 향후 사업화 목표, 판로 전망 등
	환경·사회적 효과성(5)	- 기술·설비가 판매됨으로써 환경·사회적 효과를 평가

나. 가점기준(최종선정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적용)

순번	항 목	가점	비고
1	설비공급기업과 설비수요기업이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경우 * 설비공급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사업소·영업소 등은 해당없음)	3	증빙제출
2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최근 5년 이내)	3	증빙제출
3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개발촉진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수행과제	3	증빙제출
4	순수 국내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설비	3	증빙제출
5	환경신기술 인증 및 환경기술 검증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內) * 해당기술에 한함	2	증빙제출
6	[정부 기관, 각 금융기관 등] 기술성진단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기업 * 해당기술에 한함	2	증빙제출
7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지정기업	2	증빙제출
8	설비(기술) 설치 시 핵심적이거나 전반적인 부분에 아래 내용 중 1분야 이상의 IT, 융복합 기술, 프로젝트 적용이 협약기간 내 가능한 경우 *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드론, 전기차, 수소차 *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트윈, 사물인터넷, 로봇	2	증빙제출
9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등록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정부 및 광역 자치단체 선정·등록 2점 * 기초 지자체 및 기타 단체 선정·등록 1점	1~2	증빙제출
10	천재지변, 국가 재난, 사회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 최근 6개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 2점 * 최근 6개월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1점	1~2	증빙제출
11	환경성적표지 인증,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內) * 해당기술에 한함	1	증빙제출
12	환경경영 우수기업(평가등급 A~AAA) *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1	증빙제출
13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지정서 지정기간 內)	1	증빙제출
14	[특허청]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목표달성’ 과제(최근 5년 이내) * 해당기술에 한함	1	증빙제출
15	[중소벤처기업부]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성공 과제(최근 3년 이내)	1	증빙제출

※ 가점은 항목별 중복은 가능하나, 항목 내에서 중복은 불가능

※ 총 가점은 2~13번 항목까지 최대 5점까지 부여(1번 항목 포함하면 8점까지 가능)

※ 주관기업이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가점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가점반영

<참고2>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

구분		사용 용도	계상 및 산정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1. 설비공급기업 소속 인력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 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현물로 계상 * 소속 기업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참여율×실제 참여기간(월) * 수행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 참여율은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다른 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직접비	장비 · 재료비	1. 기자재 및 시설비: 해당 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 경비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제외 2. 재료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사업 이외 수행기관 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3. 설비 제작 경비 4. 설비 운송·설치에 관한 경비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기자재 및 시설비: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자재 및 시설의 외부임차 비용 3. 재료비: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시 현금 계상 가능 4. 설비 제작 경비 - 공급기업 자체 제작: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고 재료비에 반영 - 공급기업이 아닌 외부기관 제작: 외부 제작기관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현금 산정 가능 ※ 설비공급기업 내부 보유 및 설비공급기업과 설비수요기업 간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사용료 및 임차료는 산정 불가

구분		사용 용도	계상 및 산정기준
비목	세목		
	사업 활동비	1. 여비: 국내 출장여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3.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활용, 자문비, 회의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등	1.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기준 마련 불가 *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출장여비 산정 불가 2. 수용비 및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소요경비를 계상 -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3. 기술정보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소요경비를 계상 - 자문비: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여비 포함 가능) - 회의비: 장소사용료, 인쇄비, 식비, 다과비 등 *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필요
위탁사 업비	컨설팅 비용	1. 업무의 일부를 컨설팅기관에게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1. 주관기관이 해당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산정(최대 30백만원까지 가능)

구분		사용 용도	계상 및 산정기준
비목	세목		
	기타 위탁사 업비	1.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컨설팅비용은 제외한다)	1.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2. 컨설팅기관 위탁 비용은 컨설팅비용에 반영

※ 사업과 직접 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하며, 상기 제시된 사용 용도 외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불가

※ 민간부담금 중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현물은 인건비만 계상 가능

[붙임2]

▷ 대상 수요기업

구분	기업명	개선요구사항
1	(주)이지엠케이이엔씨	목재 제조과정 시 발생하는 분진 미세먼지 제거
2	(주)거성씨푸드	수산물 도축 공정 시 발생하는 폐수처리 시스템 및 악취 제거
3	(주)진성엔텍	폐수처리설비 가동 시 악취발생
4	월성전자(주)	집수조 이물질 퇴적으로 인한 오염물 균등유입 어려움
5	제이에이씨(주)	폐수처리설비 노후, 탈수효율 저하, 폐수처리시설 환기부족
6	미래그린(주)	도금업체 폐수처리시설 노후, 탈수 효율 저하 등
7	경원목재(주)	원심력집진시설 노후
8	선명하이테크(주)	고농도 폐수 위탁처리→자체처리
9	석정케미칼	폐수처리시설 노후, 탈수기 교체
10	인천아스콘(주)	원심력 집진시설 및 여과집진시설 개선
11	민영PCI	대기방지시설 및 활성탄 흡착시설 용량부족, 여과집진시설 개선
12	인천화학(주)	HCL 및 HCN 처리
13	부천주물	집진기 필터파손, 불완전 흡 포집
14	휴원스텍놀러지	폐수처리시설 노후, 탈수기 교체, 이물질퇴적으로 배관효율 악화
15	검단아스콘(주)	방지시설 용량부족 및 노후, 악취저감대책 시급
16	누보캠인천(주)	이산화염소 탈취시설 노후
17	인천테크(주)	연소시설 악취저감

구분	기업명	개선요구사항
18	대신펜씨티(주)	방지시설 노후화 및 악취저감
19	삼창주철공업(주)	방지시설 노후화
20	선화산업(주)	난분해성 악취물질 방지시설 미흡, 노후설비 교체
21	정성테크	폐수처리시설 처리공정 부조화로 적정처리 곤란
22	조일공업(주)	여과집진시설 노후, 공정 중 발생하는 수분분진의 전처리시설 및 악취제거장치 설치 필요
23	광희(주)	국소배기후두 효율저하, 여과집진시설 용량부족
24	한밭산업(주)	순환골재 건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
25	미래E비전	황산사용의 한계로 악취처리 어려움 발생, 폐수온도에 따른 미생물 생존이 어려워 폐수처리시설 효율저하, 스팀 스트리퍼 효율저하

※ 상기 개선요구사항은 대상 수요기업이 요구한 사항으로 신청기업은 공고내용 및 관련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업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타 수요기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지역전담기관에 문의요망

※ 수요기업에 대한 문의처

- (지역전담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한재길 책임연구원(jkhan@itp.or.kr/032-260-0841)

장윤정 전임연구원(lucyjy@itp.or.kr/032-260-0843)

[붙임3]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신청서					
과제명					
주 관 기 관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우 :)			
	수행 책임자명			부 서 / 직 책	
	담당자명			부 서 / 직 책	
	이 메 일		사 무 실 ☎	휴 대 전 화 ☎	
설 비 수 요 기 업	수요과제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등 록 번 호	
컨 설 팅 기 관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 문 분 야	
	담당자명			부 서 / 직 책	
	이 메 일		사 무 실 ☎	휴 대 전 화 ☎	
	주 소				
사 업 현 황	협약기간 ~ (개월)		예상효과	
	총사업비(비율)	정 부 지 원 금 (비 율)		민 간 부 담 금 (비 율)	
	천원 (100%)	천원 (%)	천원 (%)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주관기관(설비공급기업) 대표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설비공급기업 대표자 (*필요시)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복수의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업인 경우, 기업별 대표자 날인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p>					
첨 부 :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사업계획서 1부.					

수행기관(앞쪽에서 계속)

설비공급기업(2)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	업 종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 메 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설비공급기업(3)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	업 종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 메 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설비공급기업(n)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문분야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 메 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주 소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설비공급기업)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업 (매칭희망)	
컨설팅기관	

• •

사 업 계 획 요약

과 제 명			
설 비 명		설 비	(주관)
		공급기업	(공급)
수요과제명		분 야	

구 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협약기간
금 액 (천원)			 ~
비 율 (%)			

1. 사업 추진 배경

-
-
-

2. 사업 목표

-
-
-

3. 세부 사업 내용

-
-
-

4. 세부 추진 일정(안)

-
-
-

5. 예상 감축효과 및 기타 기대효과

-
-
-

(사업계획 요약서는 1page 이내로 작성)

제1장 수행기관 일반현황

1. 주관기관(설비공급기업)

※ 설비공급기업이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각 기업별 역할을 명시하여 별도 작성

1.1. 기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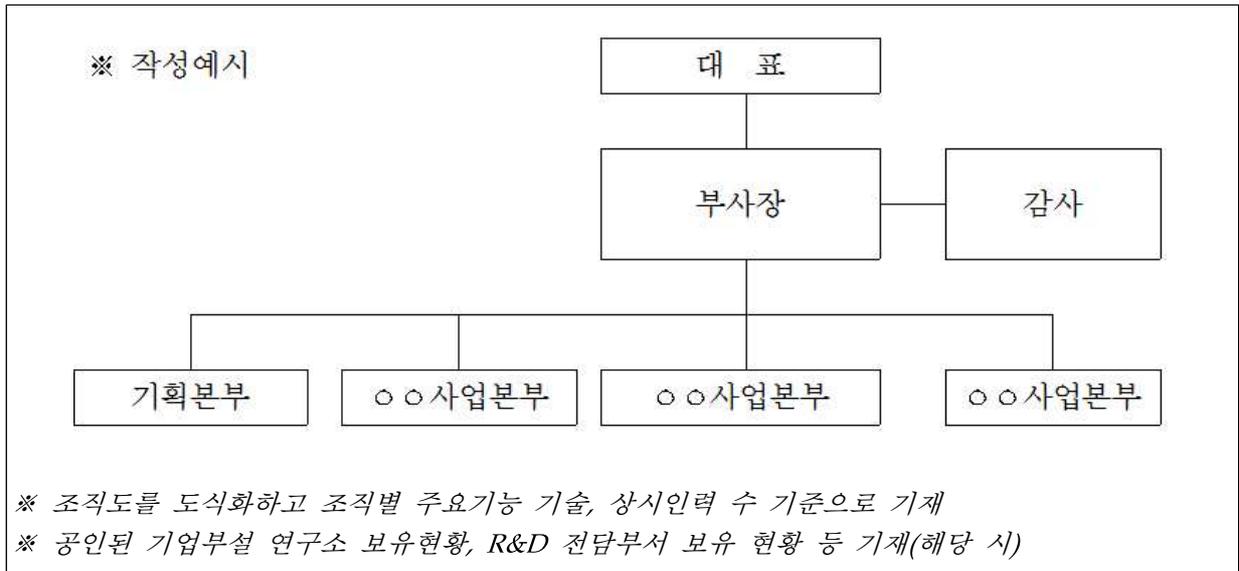
업 체 명		설립일	
설립목적			
기관연혁			
인력현황	대표자 :	직원 수 :	명 ※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주 생산품			

1.2. 최근 2개년 재무현황

(단위:천원)

구분	n-1년	n-2년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매출액		
환경산업부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이자비용		

1.3. 기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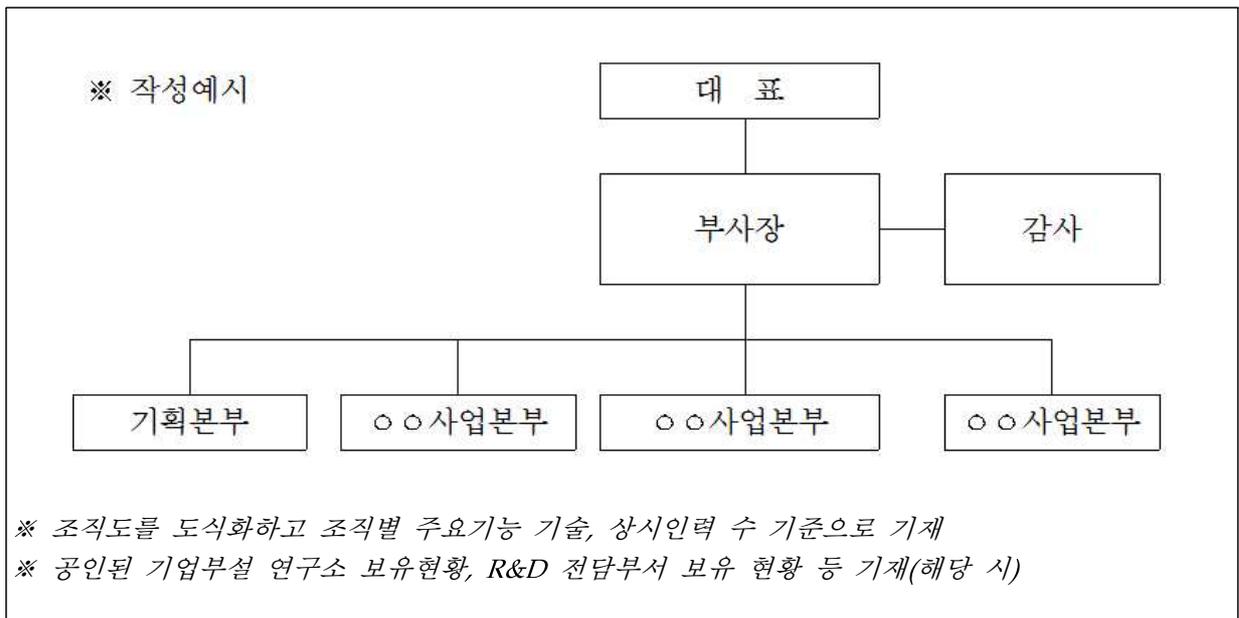


2. 설비수요기업

2.1. 기본정보

업 체 명		설립일	
설립목적			
기관연혁			
인력현황	대표자 :	직원 수 :	명 ※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주 생산품			

2.2. 기구현황



제2장 사업 추진 내용

1. 사업 추진 배경

○

* 본 사업 참여 배경 및 목적, 해당 지원사업자(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업)가 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배경 등 기술

2. 사업의 목표

○

○

3. 사업내용

3.1. 신청 기술(설비) 개요

○ 기술(설비)명:

○ 기술(설비) 개요

-

-

* 신청 기술(설비)에 대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 설비 용량 또는 규격 등 기재

* 모든 전문용어에 대하여 full name으로 표기

3.2. 신청 기술(설비) 관련 동향

○

* 신청 기술(설비) 관련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사업규모 등 관련내용 기술

3.3. 신청 기술(설비) 필요성

○ 기술(설비)의 차별성 및 우수성

-
-

* 신청 기술(설비)의 기술성·산업적 중요성, 타 기술과의 차별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술(설비)의 정부지원 사업과의 연관성

-
-

* 신청 기술(설비)가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부분을 해당 기술(설비)의 기술적 특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기술(설비)의 사업화 계획 등

-
-

* 신청 기술(설비)의 산업계 파급효과 및 시장 확보 등 사업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신청 기술(설비)의 용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신청 기술(설비) 관련 연구실적 등 (해당되는 항목 기재)

4.1.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 최근 3개년 이내 실적만 기재

No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총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①			00.00~00.00	
②				
③				

* 최근 3개년 이내에 추진한, 동 지원사업 신청 기술(설비) 관련 정부출연 개발과제 내용만 기재
 * 정부출연 개발과제 협약서, 최종 평가결과 통보 공문, 기술료 납부 서류 등 증빙제출

[과제 세부 추진내용]

No.	과제명	추진내용
①		
②		
③		

* 상기 "1.수행실적"에 기재한 각 과제별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4.2. 지식재산권

No.	등록번호	명칭	권리자	등록일

* 동 지원사업 신청 기술(설비) 관련 지식재산권만 기재, 관련 증빙자료(특허증 등) 필요

4.3. 성능시험검사

No.	성능시험검사 명칭(내용)	발급기관	발급일(예정)	비고

* 동 지원사업 신청 기술(설비) 관련 성능시험검사 결과만 기재, 관련 증빙자료(시험성적서 등) 필요

5. 설비공급기업-설비수요기업 협력체계

* 설비공급기업과 설비수요기업 매칭 전이므로 설비공급기업의 안을 작성

5.1. 사업비 부담

(단위 : 천원,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업
		(현금) (현물)	(현금)
100%	%	%	

5.2. 협력체계

○

* 신청 기술(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설비공급기업과 설비수요기업 간 협의 내용, 기술(설비) 설치 이후 설비공급기업의 하자보수이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3. 컨설팅기관 협력체계

○

6. 세부추진일정(안)

No.	사업추진내용	진도율(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
(필요 시 행 추가)

제3장

예상 효과

1. 기술 명(과제명):

2. 환경개선 예상 효과

사업 전(A)	사업 후(B)	예상효과

3. 산출근거

※ 효과 산정 시, 신청 기술(설비)를 설비수요기업에 설치하였을 때의 효과만 산정(전 국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가정하는 등 설비수요기업 범위를 넘어서는 효과 산정 불가)

예시) 신청설비 : A 집진기

- 사업 전 : 설비수요기업에서 A 집진기 도입 전 기존 사용하던 집진기 사용 따른 사용량 및 배출량
- 사업 후 : 설비수요기업에서 A 집진기 도입 이후 사용량 및 배출량 (예상치)
- 예상 감축량 : 사업 전 배출량 - 사업 후 배출량

4. 기타 기대효과

개 요	
세부내용	

제4장 사업비 사용계획 등

1. 총괄표

(단위 : 천원,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업
		(현금)	(현금)
		(현물)	
100%	%	%	

※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업이 복수인 경우, 표의 칸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2. 세부 사용계획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인건비	인건비	소계		
직접비	장비 및 재료비	소계		
		계		
	사업활동비	계		
위탁사업비	컨설팅비용	소계		
		계		
	기타 위탁사업비	계		
합 계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외주제작 견적서 등)

* 장비·재료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 입증 필요

제5장 사후관리 계획

<p>유지·보수 계획 및 인력운용 계획</p>	
<p>사후관리 대응계획</p>	
<p>모니터링 방 법</p>	
<p>성과관리 방 법</p>	
<p>기 타</p>	

제6장

별첨서류

1. 설비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설비공급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3. 설비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4. 설비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각 1부.
5. 설비공급기업 최근 2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6. 설비공급기업 고용 증빙 자료(4대보험 중 가입자 확인 가능 자료) 사본 1부.(사업비에 인건비 계상시)
7. 설비공급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1부.(해당 기업)
8. 가점 현황 증빙 사본 각 1부.(해당 시)
9. 신청 기술 관련 증빙자료(특허증, 시험성적서 등)
10.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조감도/ 결선도 등
11. 설비 사양 파악 자료(예시: 카달로그 등)
12. 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등 기타 증빙서류
13.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장비·재료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 포함)
14. 설비공급기업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15. 설비공급기업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원본 각 1부.
16. 설비공급기업 자기진단서 원본 각 1부.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별첨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에 페이지 기재 필요
※ 사업계획서 표지를 제외한 '사업계획 요약'부터 1페이지 시작
2.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각 제출서류 해당 기업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3.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 개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 또는 직인만 유효
※ 각종 제출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을 직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개인)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직인을 한 면에 동시 날인한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출서류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